仲裁硏究, 第 27 卷 第 2 號
2017년 6월 1일 발행, pp. 121~142
http://dx.doi.org/10.16998/jas.2017.27.2.121

논문접수일 2017. 05. 01.
심사수정일 2017. 05. 18.
게재확정일 2017. 05. 26.

조정인 인증제에 관한 국제적 동향*
-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

A Global Trend on the Accreditation for Mediators
- Focused on the U.S. and European Countries -

이로리**
YI, LORI

〈목 차〉

Ⅰ. 서 론
Ⅱ. 조정인 인증제의 의의
Ⅲ. 국가 관리형 인증제
Ⅳ. 민간 주도형 인증제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주제어 : 조정, 조정인, 조정인 자격, 교육, 인증, 민간조정

* 본 연구는 본인이 참여한 법무부 연구용역, 「ADR기본법 제정방향 및 현행 ADR기구의 합리적 운영방안(2015)」 연구 중 국가별 조정인 인증제도에 관한 기초연구와 2017년 5월 19일 대법원・한국조정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본인이 발제한 "조정인교육의 필요성 및 교육내용에 관한 검토" 초안을 기반으로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발전시킨 논문임을 밝힌다. 본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코멘트를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 계명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Ⅰ. 서 론

한국에서는 1990년 「민사조정법」[1]의 제정이후 민사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2], 개별법에 근거한 행정형 조정제도[3] 또한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사회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조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4] 조정은 판사가 내리는 판결로 분쟁이 강제적으로 해결되는 재판과 달리 조정인(조정위원)이 제시하는 조정안을 당사자들이 수락해야 분쟁이 해결되는 자발적 분쟁해결제도다. 따라서 조정에는 재판과는 다른 당사자 중심의 분쟁해결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조정인의 시각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책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분쟁당사자들의 입장에서 그러한 조정안이 자신들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조정에 대한 자신들의 대안(예를 들어 소송)과 비교하여 좋은 해결책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것이라면 당사자들이 그 조정안을 수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한 분쟁해결의 구조는 조정의 유형(사법형, 행정형, 민간형 조정)이나 조정으로 도출된 합의의 효력('재판상 화해' 또

---

1) 「민사조정법」은 법률 제4202호로 1990년 1월 13일 제정되었으며, 이와 함께 민사조정규칙이 1990년 8월 21일 대법원규칙 제1120호로 제정되었다. 장경찬, "조정위원의 역할", 「한국조정학회 제6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1. 1. 15, p.2.

2) 민사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그동안의 민사조정법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① 수소법원에 직권조정회부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스스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도록 의무화한 점 [법률 제4505호, 1992. 11. 30., 일부개정], ② 민사조정제도의 활성화와 민사소송제도와의 상호 보완적인 적정한 역할분담을 통하여 분쟁해결제도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로서, 조정사건과 소송사건의 관할 상이에 따른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수소법원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만 조정회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조정회부를 하게 한 점 [1998년 12월 28일 일부개정], ③ 민사조정절차에 있어 조정기관의 범위를 넓히고,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에 의한 조정사건처리의 경우 재판장 외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조정을 담당하게 하고, 조정담당판사에 대하여 조정장과 같이 조정위원에게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조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한 점 [법률 제6407호, 2001. 1. 29., 일부개정], ④ 변호사자격이 있고 일정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상임조정위원으로 위촉하여 상임조정위원이 조정장으로 조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점 [법률 제9417호, 2009.2.6.,일부개정] 등을 들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조정법 제정·개정 이유 참조 (2017년 5월 1일 검색).

3) 행정형 조정제도는 행정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이 그 소관사무 등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각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행정형 조정'이라는 의미는 행정사건을 조정의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조정절차를 담당하는 주체가 행정기관 내지는 이에 준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며, 법원이 주관하는 '사법형 조정'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행정형 조정은 사인간의 분쟁을 관련 행정기관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강수미, "행정형 ADR의 현황과 개선방안", 「중재연구」 제25권 제4호, 한국중재학회, 2015.12, p.57.

4) 행정형 조정기관의 예로 「환경분쟁조정법」에 근거하여 환경부에 설치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동 법에 근거하여 시·도 에 설치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금융위원회 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소비자원에 설치되어 있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설치된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설치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다. Ibid., p.58. 참조.

는 '민사상 화해')과 상관없이 조정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정인은 분쟁사안에 대한 전문성과는 별개로 조정의 원리를 이해하고, 조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정기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법원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형 조정기관들에서 조정위원을 위촉하는데 있어 조정전문성 내지는 조정교육을 받은 경험 등과 같은 요소는 전혀 고려되지 않으며, 관심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5] 예를 들어 「민사조정법」 제10조(조정위원)에 따르면, 조정위원은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미리 위촉한다. "학식과 덕망"은 분쟁해결에 유용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거나 풍부한 사회생활의 경험과 훌륭한 인격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풍부한 사회생활의 경험과 훌륭한 인격 등의 덕망이라는 요소는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일정한 경력이 있으면 그러한 덕망을 갖춘 것으로 본다. 법원에 조정위원으로 위촉된 조정위원은 변호사 ·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 조정위원뿐 아니라 의료, 건축, 경영 회계, 환경, 정보, 지적재산권, 국제거래, 노동, 시가, 임료감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6]

그러한 맥락에서 그동안 조정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다룬 국내논문들은 공통적으로 조정인 교육 내지는 조정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고,[7] 조정전문가 양성방안과 관련하여 일본, 독일 등의 사례를 소개하는 다수의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외국의 조정인인증제와 관련한 선행연구들[8]은 주로 2004년 제정된 일본의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ADR법)」을 중심으로 한 민간분쟁해결절차 업무의 인증제도 및 조

5) 국내 조정기관의 조정위원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은 함영주 · 서성운, "조정인의 선발과 교육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제16집 제1호, 중앙법학회, 2014년 3월 참조.

6) 장경찬, *supra note* 1, p.6.

7) 국내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정인 교육 내지 조정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을 제기한 논문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이주원, "한국조정제도의 발전방향", 「중재연구」, 제12권, 2002년 8월; 金容燮, "行政法上 紛爭解決手段으로서의 調停,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2004년 10월; 정선주, "ADR통일절차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민사소송」, 제11권 제1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7년 5월; 오대성, "민사조정의 운영실태와 그 활성화방안에 관한 법사회학적 연구 - 광주 및 전남지역의 법원을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7년 8월; 이강빈, "ADR제도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8년 3월; 정준영, "가칭 ADR 기본법의 제정방향과 선결과제", 「언론중재」, 겨울호, 2010; 박노형, "조정의 선진화 및 활성화 소고", 「분쟁해결」, 창간호, 한국조정학회, 2011년 6월; 함영주, "미국 법원 연계형 조정의 운영과 시사점", 「민사소송」 제14권 제2호, 한국민사소송법 학회, 2010년 11월; 김상찬 · 양영화, "우리나라 ADR제도 활성화 방안", 「법학연구」, 한국법학회, 2012년 2월; 이로리, "우리나라 조정제도의 현황과 과제", 「중재」, 대한상사중재원, 2012년 6월; 이로리, "로스쿨에서의 조정교육의 필요성 및 방법론에 관한 제언", 「한국조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문」 2013년 8월; 정영화, "한국 사법제도의 국제비교와 효율성 개선방안 - 소액심판의 강제약식조정제도 도입",「저스티스」통권 제146-3호, 한국법학원, 2015년 2월.

8) 김상찬, "일본 ADR법상 인증제도의 현황과 과제", 「중재연구」제22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2년 8월; 함영주 · 서성운, "조정인의 선발과 교육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제16집 제1호, 중앙법학회, 2014년 3월; 김상찬, "일본의 조정인 양성현황과 시사점, 「법학연구」, 제59권, 한국법학회, 2015년 9월; 박철규, "ADR(대체적 분쟁해결)의 정착을 위한 중립인 (neutrals)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제70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년 2월; 김용섭, "민간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 - 독일과 일본의 법제도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57호, 한국법학원, 2016년 12월.

정인 양성, 2012년 제정된 독일의 「조정 및 재판외 분쟁해결촉진법(조정법)」에 따라 도입되는 인증조정인제도 그리고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의 대표적인 민간 조정인 교육 및 인증프로그램들을 다루고 있다.

국내에서는 법원을 비롯한 조정기관들이 조정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는 위촉된 조정위원을 위한 조정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도 하는데, 조정기법에 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교육 보다는 대체로 조정인의 개인적인 조정경험을 공유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이나 심리학 등에 관한 전문가 특강 등을 제공한다. 민간에서는 대표적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2012년부터 연 2회 정기적으로 법조인, 전문가,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3일 과정의 체계적인 조정전문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조정인 양성교육 내지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의 수는 매우 적으며, 실제 민간에서 교육을 통하여 조정인을 양성한다 하여도 조정기관의 조정위원으로 위촉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자발적인 교육 참여의 유인이 매우 적은 실정이다. 한국의 경우 국가가 관리하는 조정인 인증제는 없으며, 민간의 조정인 인증제 또한 아직까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일본, 독일 등 개별 국가별 조정인 인증제에 관한 연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조정인 인증제의 유형(국가 관리형 인증제, 민간 주도형 인증제)별로 미국과 유럽의 대표적인 국가들(오스트리아, 벨기에, 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을 중심으로 조정인 인증제의 국제적 동향을 분석하고, 한국에서의 조정인 인증제 도입 및 교육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조정인 인증제의 의의

조정인 인증이란 조정인의 자격 및 경험이 조정수행에 충분하다는 공식적 인정을 의미한다.[9] 조정인 인증은 조정수행에 필요한 조정교육을 전제로 하는데, 그러한 조정인 교육과 인증은 조정의 질(質)을 확보하고, 조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법률, 의학, 건축 등과 같이 특정 분쟁사안에 대한 조정인의 전문성은 분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있어 권위를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런데, 분쟁사안에 대한 조정인의 전문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실제 분쟁해결의 장벽으로 작용하는 '분쟁 당사자들'의 다양한 문제들을 간과하게 된다. 조정인이 분쟁사안에 대하여 법적 · 기술적 평가를 통하여 미리 도출된 결론을 가지고 당사자들을 설득하는 방식의 조정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조정이 조정인 개인적 역량에만 의존해서 진행되는

9) Laurence Boulle, *Mediation: Skills and Techniques*, Butterworths, 2001, p.276.

경우, 조정인 개인 간의 역량의 차이로 인하여 조정사건 처리의 편차가 존재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분쟁당사자들이 경험하는 조정에 대한 인식과 신뢰 또한 달라질 수 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조정인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조정인 인증제의 활용은 조정인의 자발적인 교육 참여를 유도하여 조정의 질을 높이고, 일반 국민의 조정(인)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조정인 인증제는 국가 관리형 인증제와 민간 주도형 인증제로 구별할 수 있다. 국가 관리형 인증제는 법적 근거를 갖는 인증제로서 국가가 법으로 조정인 또는 조정서비스 기관의 인증요건을 정하고, 인증 또는 등록된 조정인과 조정서비스 기관을 관리하는 유형이고, 민간 주도형 인증제는 법적 근거 없이 시장의 기준으로 민간의 조정서비스기관이 조정인 인증기준을 정하고, 조정인 교육과 인증을 실시하는 유형이다. 민간 주도형 인증제의 대표적인 국가는 민간조정이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과 영국, 홍콩, 싱가포르 등을 들 수 있다.

EU회원국의 조정제도에 관한 EU의회보고서(2014)[10]에 따르면, EU회원국의 경우 조정인 인증제를 두지 않은 회원국들과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원국들로 나뉘는데, EU 28개 회원국 중 프랑스를 포함한 9개국[11]은 조정인 인증제를 두고 있지 않으며,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13개 회원국[12]은 법에 근거한 인증제를, 영국을 포함한 6개국[13]은 시장기준에 근거한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EU의회 보고서(2014)에서는 인증제가 없는 국가로 분류되지만, 2012년 7월 26일 시행된 조정및재판외분쟁해결촉진법(Gesetz zur Föderung der Mediation unt anderer Verfahren der auβergerichtlichen Konfliktbeilegung: Mediationsgesetz: 이하 '조정법'이라 함)에 따라 인증조정인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국가 관리형 인증제 국가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2017년 5월 기준으로 인증 및 교육요건에 관한 법무부 초안(2014년 1월 초안)이 마련되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아 시행 전에 있는데,[14] 본 논문에서는 독일을 국가 관리형 인증제 국가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

10) European Parliament, '*Rebooting' the Mediation Directive: Assessing The Limited Impact of Its Implementation and Proposing Measures to Increase the Number of Mediations in the EU*, 2014, pp.132-133.

11)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포르투갈, 스웨덴, ibid. 독일은 2012년 조정법을 제정하여 조정인 인증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유럽의회의 보고서 (2014)에서는 인증제가 없는 국가로 분류되었다.

12)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13) 덴마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영국.

14) 법무부의 인증조정인 교육에 관한 규정 (Zertifizierte-Mediatoren-Ausbildungs-Verordnung, ZMediatAusbV) 초안. 김용섭, *supra* note 8, p.225.

〈미국과 EU회원국의 조정인 인증제 현황[15]〉

인증제 유형	국가 수	국가
국가 관리형 인증제	14	독일 (예정)*,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그리스, 헝가리, 이태리, 룩셈부르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민간 주도형 인증제	7	미국,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인증제 없음	8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포르투갈, 스웨덴

조정인 인증제가 없는 프랑스의 경우 민사소송법에서 조정인의 자격에 조정수행에 필요한 관련 교육 및 경험을 가질 것으로 요구하고 있고,[16] 민간 주도형 인증제를 실시하는 덴마크의 경우 재판행정법으로 법원이 임명할 수 있는 조정인의 자격을 판사나 변호사로 한정하면서, 조정인으로 활동하기 위해 덴마크 법원이나 변호사협회가 승인한 최소한의 조정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17]

다음에서는 조정인 인증제 유형별 (국가 관리형 인증제, 민간 주도형 인증제)로 미국과 EU회원국 중 조정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국가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이탈리아, 독일, 영국,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조정인 인증제 및 교육의 내용을 검토한다.

Ⅲ. 국가 관리형 인증제

1.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3년 민사조정법 (Bundesgesetz über Mediation in Zivilrechtssachen)에 근거하여 2004년부터 등록조정인의 양성을 위한 법무부령 (Verordnung des Bundesministers für Justiz über die Ausbildung zum eingetragenen Mediator)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18] 연방 법무부는 조정인의 자격과 교육요건을 결정하고, 등록조

15) 위의 표는 본 논문의 미국과 EU회원국의 조정인 인증제 현황표로서, EU회원국의 인증제는 EU의회보고서 (2014) 자료를 기초로 작성하였다. 독일의 경우, 동 보고서에서는 인증제가 없는 국가로 기술되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2012년 조정법 이후 인증조정인에 대한 법적 근거라 마련되었고, 조정인 교육 및 인증요건에 관한 2014년 법무부 규정 초안이 나와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독일을 국가 관리형 인증제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16) 프랑스 민사소송법 제1533조에 따르면, 조정인은 형사 또는 징계형의 대상이 된 적이 없어야 하고, 대상 분야에 대한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조정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 교육 및 경험을 가져야 한다. EU, *supra* note 10, p.30.

17) *Ibid.*, pp. 82-84.

정인명부 (List of Registered Mediators)를 관리한다. 법무부령은 조정인이 등록조정인 명부에 등록되기 위해 신청자가 이수해야 할 최저 단위의 교육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등록조정인 명부에 등재되려면 ① 신청인은 최소 28세 이상은 되어야 하고, ② 전문적으로 자격을 갖추고, 신뢰할 수 있는 자임을 나타내는 서면 인증시험을 통과하고, 바른 행실과 신뢰성에 대한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③ 책임보험 (liability insurance)을 획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조정인명부에 최초 등록은 5년간 유효하며, 5년의 기간 동안 상급 교육프로그램에 최소 50시간 출석한 것을 증명하는 경우, 등록은 10년의 기간으로 갱신될 수 있다. 등록조정인은 조정이론과 실무에 대한 교육을 받고, 평가를 받는다. 조정이론교육 시간은 일반적으로 150시간으로, 조정의 개관 및 역사적 배경, 조정절차, 조정방법 및 단계, 커뮤니케이션 스킬, 분쟁 분석, 신청의 범위, 성격이론, 윤리적 문제 및 법적 체계를 포함한다. 실습은 자기 인식, 실무 세미나, 동료 그룹 활동 및 사례분석으로 구성된다. 법원민사조정협회 (Verband für Mediation gerichtsanhängiger Verfahren)는 법원회부조정인 (court-referred mediators)을 위한 특별인증제에 관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동 제도 하에서 신청인은 일정한 시험을 통과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19]

등록조정인의 일반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민사조정법 제I장 (Chapter I)에 따르면 조정인은 조정 수행 시 '등록조정인 (Registered Mediator)'라는 타이틀을 사용해야 하고, 조정의 이용을 권유한데 대하여 어떠한 보상도 받아서는 안 된다. 조정인은 당사자들을 상담하거나 조언을 해서는 안 되며,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조정인은 법적 조언에 대한 잠재적 필요성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조언을 해야 한다. 조정인은 그의 직업적 권한범위 내에서만 행동해야 하며, 월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조정인은 당사자에게 민사조정의 성격과 법적 결과에 대해 설명하여야 하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인간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리고 중립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조정인은 당사자에게 합의의 집행 가능성에 대해 조언해야 하며, 조정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조정의 전 단계에 걸쳐 모든 단계에 대하여 기록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정인은 조정으로부터 알게 된 모든 사실을 비밀로 유지해야 하고, 조정의 맥락의 모든 문서도 비밀로 다루어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조정인의 피고용인 및 훈련생에게도 적용된다.[20]

2. 벨기에

벨기에는 2005년 2월 21일에 조정규정을 공식적으로 제정하였고, 동 규정들은 2005년 9월 30일 민사소송법 (Code Judiciaire/Gerechtelijk Wetboek)의 한 챕터에 포함되는 개정의 형

18) 최옥환, 민간형 조정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pp.169-170 참조.
19) European Parliament. *supra* note 10, p.19.
20) *Ibid.*

식으로 발효되었다. 동 법의 개정은 조정의 범위를 가사분쟁에서 모든 유형의 민사 및 상사 소송으로 확대하였고, 벨기에 최고법원 (Cour de Cassation) 절차를 제외하고 모든 법원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나 수행되는 조정에 적용된다. 동 규정에 따르면, 분쟁당사자들은 조정인이 될 자를 결정하거나 조정인을 선택할 수 있는 제3자를 임명할 수 있다.[21]

민사소송법을 개정한 2005년 법은 연방위원회 (Federal Commission)의 창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 위원회는 조정인 인증과 조정교육프로그램 제공기관 인증의 권한을 갖는다. 연방위원회는 조정의 유형에 따라 인증기준을 정의하고, 조정인 행위규범을 확립할 임무를 갖는다.[22] 동 법에 명시된 인증조정인 (accredited mediator)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후보자들은 그들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립할만한 충분한 직업적 경험을 증명하고, 조정업무에 있어 충분한 관련 경험을 축적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들은 자신의 독립성과 공정성의 보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들은 조정인이 되는데 부적절할 수 있는 범죄로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 ④ 후보자들은 조정인의 기능과 양립할 수 없는 징계 또는 행정적 제재의 대상이 된 적이 없어야 한다. ⑤ 조정인은 보수교육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정인의 기본교육은 40시간으로, 40시간의 기본교육 후 선택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6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23]

판사의 권유와 당사자의 동의로 분쟁이 조정에 회부되는 경우, 판사는 당사자들이 비인증조정인을 요청하지 않는 한 인증조정인을 조정인으로 임명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비인증조정인을 요청하고, 그 조정인이 조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부족하지 않다면 당사자들의 요청을 수락하여야 한다.[24] 법으로 인증조정인의 요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법원은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비인증조정인을 조정인으로 위촉할 수도 있다.[25]

3.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경우, 조정인 교육 및 인증을 다루는 상세한 법 규정을 두고 있다. 조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법무부가 관장하는 국가조정기관명부 (National Register of Mediation Organization)에 등록되어야 하는데, 그 명부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목록을 포함한다. 법무부가 이들 기관의 명부 등록신청과 승인을 담당한다.[26] 개별 조정인에 대한 인증은 등록된 조정기관들이 관할하고, 인증된 조정인은 다수의 법무부 승인 조정기관

21) *Ibid.*, p.74.
22) *Ibid.*
23) 민사소송법 (Code Judiciaire) 제1726조.
24) European Parliament, *supra* note 10, p.73.
25) *Ibid.*, p.74
26) Integriete Mediation e.V – Germany and the European Association of Judges for Mediation (GEMME), *EU Handbook on Mediation: Mediation Law and Practice in Other EU Countries*, Italy 편, 2014, 참조.

들 중 하나에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조정을 수행할 수 있다. 지역의 변호사협회, 상의 (商議, Chamber of Commerce) 및 다양한 전문직 기관들은 내부에 조정기구 (mediation organization)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한 조정기구를 설치한 경우,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이탈리아 법무부에 조정기관등록을 해야 한다. 조정서비스기관이 개별 조정인을 인증하는데 있어 법령 28 (Legislative Decree 28)의 인증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기관 고유의 추가적 요건을 부가할 수도 있다. 법령 28의 개별 조정인 인증기준에 따르면, 조정인은 50시간의 개발교육을 받아야 하고, 매 2년마다 최소 1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조정인은 3년제 학사학위를 갖고 있거나 전문직 협회 (professional society)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새로 인증된 조정인은 인증 후 바로 첫 2년간은 적어도 20건의 조정사건에서 경험 있는 조정인을 보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법령 28의 규정요건에 추가하여, 각 조정기관은 고유의 추가적 요건을 부가할 수 있다. 동 법령 제16조에 따라 조정인 인증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허가받은 기관의 등록명부가 유지된다. [27]

4. 독일

독일은 2002년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15a EPGZPO에서 조정담당법관에 대해 전문조정인 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변호사의 경우 연방변호사법 제7조 a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 소정의 조정인 교육을 받은 변호사들만 자신을 조정인이라고 표시할 수 있게 하였다. 가사조정의 경우 조정인은 연방가사조정협회 (BAFM)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다양한 전문분야를 포함하는 200시간의 조정인 교육을 받은 후에 활동한다.[28]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된 조정법 (Mediationsgesetz)[29] 제5조는 인증조정인 관련 교육 및 연수의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 따르면 조정인은 스스로 적절한 초기교육 및 정기적 추가 교육으로 조정을 통하여 능숙한 방식으로 당사자들을 이끌 수 있는 이론적 지식과 실무적 경험을 보유할 것을 보장하는데 책임을 져야한다. 적절한 초기교육은 특히 ① 조정의 절차 및 기본조건과 조정의 기본사항에 관한 지식, ② 협상 및 조정기법, ③ 분쟁에 관한 권한, ④ 조정을 규율하는 법과 조정에서의 법의 역할에 대한 지식,

27) European Parliament, *supra* note 10, p.42.

28) 정선주, “ADR통일절차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민사소송」, 제11권 제1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7년 5월, p.295.

29) Gesetz zur Föderung der Mediation unt anderer Verfahren der auβergerichtlichen Konfliktbeilegung. 독일 조정법은 2012년 7월 21일 제정되어, 같은 해 7월 26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다음의 총 9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 개념 확정, 제2조 절차: 조정인의 과제, 제3조 공개의무: 활동제한, 제4조 비밀유지의무, 제5조 조정인의 교육 및 연수: 인증조정인, 제6조 (조정인 교육에 대한) 명령수권, 제7조 학문적 연구계획: 조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8조 평가, 제9조 경과규정. 동 법의 제정은 전통적인 소송중심의 문화에서 당사자 합의를 기초로 하는 자율적 분쟁해결 문화로의 전환과 권리 중심의 사법적 판단에 대한 대안으로 분쟁과 갈등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동인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김용섭, *supra* note 8, p.223.

⑤ 실무연습, 역할극 및 개인지도 (supervision)에 관한 지식을 포함해야 한다.[30]

2012년 조정법 (Mediationsgesetz)에 따라 법무부는 '인증조정인' (certified mediator) 타이틀을 쓸 수 있는 조정인의 인증요건을 설정하는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갖는다. '인증조정인'이라는 타이틀이 조정인에게 다른 일반 조정인 보다 더 많은 법적 권한을 갖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목적은 그러한 타이틀이 갖는 홍보의 효과로 인하여 실무에서 동등한 교육을 받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31] 조정인의 인증요건에 관한 규칙은 기본적 훈련 및 실무경험, 보수교육의 양, 기본 및 상급 훈련 그리고 교육의 최저 시간, 훈련강사를 위한 자격요건 및 조정 훈련에서의 최종 시험의 범위 등을 포함한다.[32]

2014년 1월 30일 성안된 법무부의 인증조정인교육에관한규정 (Zertifizierte-Mediatoren-Ausbildungs-Verordnung, ZMediatAusbV) 초안이 마련되었지만 2017년 5월 현재 기준으로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동 규정 초안은 9개 조문[33]과 시행일에 관한 부칙조문[34]을 두고 있으며, 별표에서 인증조정인의 교육과 관련한 120시간의 교육시간과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동 초안의 제2조 기본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인증조정인은 제3조의 교육의 이수와 더불어 직업교육 또는 대학교육을 충실히 이수하였고, 최소 2년간의 실무적인 직업적 활동을 하였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3조 교육에서는 인증조정인의 교육은 동 초안의 별표에 명기된 교육을 이수하되, 교육을 실무적 연습, 역할놀이, 개인지도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제4조의 계속연수와 관련하여, 인증조정인은 정기적으로 계속연수로 2년 이내 20시간의 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다. 제5조는 실무경험을 규정하고 있는데, 2년 이내 4건의 조정절차의 수행실적의 입증을 요구한다.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수행실적을 입증하기 위하여 익명으로 처리한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제9조 경과규정에 따르면, 2012년 7월 26일 이전에 조정인 교육을 받은 조정인은 최소한 90시간을 이수하고, 아울러 조정인 또는 보조 조정인으로 최소한 4건의 조정절차를 수행한 경우 제2조의 기본자격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35] 독일에서는 아직 확정된 규정이 발효되지 않아 인증조정인제도가 완전히 정착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50만 명 이상이 조정인 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조정인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36]

---

30) German Mediation Act, Section 5(1).

31) Dominik Helmut Carle, *A comparative analysis of mediation by examination and critique of the theory and practice thereof in Germany*, Scotland and Switzerland, LL. M thesi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Glasgow, 2015, p.27.

32) European Parliament, *supra* note 10, p.33.

33) 동 초안은 제1조 적용영역 (Anwendungsbereich), 제2조 기본자격요건 (Grundqualifikation), 제3조 교육 (Ausbildung), 제4조 계속연수 (Fortbildung), 제5조 실무경험 (Praktische Erfahrung), 제6조 성공적인 교육이수 증명서 (Bescheinigung), 제7조 교육 및 계속연수시설의 요건 (Anforderungen an Aus-und Forbildungseinrichtungen), 제8조 유럽연합법에 따른 동등자격 (Nach dem Recht der Europäischen Union gleichwertige Qualifikation), 제9조 경과규정 (Übergangsbestimmung)에 관한 9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용섭, supra note 8, pp.227-228.

34) 제10조 효력발생일 (Inkraften)에 따르면, 법규명령을 발한 후 1년의 과도기에서 시행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bid.*, p.228.

35) *Ibid.*, p.228, p.230.

Ⅳ. 민간 주도형 조정인 인증제

1. 미국

조정을 포함한 ADR에 대하여 적극적인 공공정책을 취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연방차원에서의 통일된 조정인 인증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정부가 인증하더라도 전문가의 활동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각 주에서 조정인과 관련된 규칙 또는 지침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조정인에 대한 인증이나 규제기관과 같은 일반적인 제도는 없다.[37] 법원의 조정인 명부의 작성과 관리도 국가에 의한 인증제도 대신 전문가가 일정한 분쟁조정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38]

법원조정의 경우, 미국 50개 주(州)의 조정인 기준을 비교한 *Northern Virginia Mediation Service* 보고서 (2014)[39]에 따르면, 50개 주 중 28개 주는 법원에 의해 인증되거나 법원조정인 명부에 등재되기를 희망하는 조정인을 위한 포괄적인 주차원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28개 주 중에서 25개 주는 민사조정을 희망하는 사람보다 가사분쟁의 조정을 희망하는 조정인에게 더 많은 교육과 조정경험을 요구한다.

민사조정인의 교육을 요구하는 28개 주 중에서 교육시간과 관련하여 14개 주는 40시간, 4개 주에서는 30-40시간, 6개 주에서는 20-30시간, 2개 주에서는 20시간미만의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2개 주는 불분명함). 4개 주에서는 법원 민사 조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법학학위를 요구하고 있고, 5개 주에서는 다른 유형의 교육 및 전문적 경험 (예를 들어 학사학위에 6년 이상 경영경험 등)을 요구한다. 일부의 경우에, 그러한 요건의 면제가 허용되기도 한다.[40] 주 법원에서 법원 조정인명부에 등재되기 원하는 조정인에게 사전에 인정된 조정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조정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지 그 자체로 법원이 공식적으로 그 조정인의 공정성, 중립성을 포함한 조정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주 법원에서 법원조정인 명부에 등록되기 위한 자격요건들 중에 최소 시간의 조정교육을 받거나 또는 교육 후 평가를 통하여 조정인 인증을 받도록 요구하는 대표적인 주의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36) Half/Shlieffen, Handbuch Mediation, 3 Aufl., C.H.Beck, 2016, S. 1225 ff, *ibid.*, 각주 30)에서 재인용.

37) Linklaters, *Commercial Mediation – A Comparative Review*, 2013 (file:///C:/Users/LG/Downloads/mediation_2013_7053.pdf, 2015년 11월 15일 검색), p.46.

38) *Ibid.*

39) Northern Virginia Mediation Service, *State – by- State Guide to Court Mediator Qualification Standards*, 2013 (https://nvmsus.files.wordpress.com/2014/11/us-mediation-certification-standards.pdf, 2017년 4월 검색), p.3.

40) *Ibid.*

〈조정인 교육 또는 인증을 요구하는 개별 주 (예시)[41]〉

주 (State)	교육프로그램 제공기관	교육 시간	교육내용
Alabama	Alabama Center for dispute Resolution (비영리기관)	20	조정기본교육, 최소한의 모의조정연습 및 윤리교육 *Alabama Code of Ethics for Mediator
Arkansas	Arkansas ADR Commission이 승인한 조정인 인증교육과정	40	기본 조정교육 *Requirement for the Conduct of Mediation and Mediators
California	*Model Qualification Standards for Mediators in Court-Connected Mediation Programs for General Civil cases, 각 주 최고법원 (Superior Court) 에서 채택 여부 결정	40	조정윤리, 문화, 젠더문제 및 기타 기본 조정교육. 적어도 32시간은 하나의 포괄적인 수업으로 이수
District of Columbia	Multi-Door Dispute Resolution Division (DC Superior Court)	40	- 40시간의 기본조정교육은 경험 있는 조정인의 감독 하에 수습을 포함한 조정기법교육을 포함 (강의/연습/조정절차, 실연/조정인의 역할, 조정기법 및 조정인의 윤리기준, 교육생에 대한 평가 등)
Florida	Florida Dispute Resolution Center (인증) Florida Supreme Court 인증 주 법원 조정교육프로그램	N/A	플로리다 주 대법원 인정 조정교육프로그램 (30점), 교육 (10점), 멘토십 (60점)
Georgia	Georgia Office of Dispute Resolution	28	역할극과 참여 형 연습을 포함하는 기관교육 및 최소한 5건의 조정 참관 또는 공동조정
Indiana	Indiana Supreme Court Commission for Continuing Legal Education 승인 민사조정교육프로그램	40	*모든 등록 조정인은 변호사로, 최소 40시간의 조정교육 이수
Kansas	Supreme Court Rule 902따라 조정인 승인	16 (초기 교육) /6 (매년 보수 교육)	- 핵심조정교육 (core mediation training): 분쟁해결기법, 중립성, 합의서면, 윤리, 역할극, 커뮤니케이션기법, 사례 평가 및 조정관련 법 - 초기 교육은 120일 이내 연속적인 방법으로 수행
Kentucky	Supreme Court of Kentucky	40	커뮤니케이션기법, 분쟁해결 이론 및 실습, 조정이론, 실습 및 기법, 법원 절차
Louisiana	·Louisiana State Bar, ADR Section에서 조정인 명부 관장 ·승인된 교육과정 또는 기관	40	- 5년 미만 변호사인 경우, 승인된 교육과정에서 40시간 교육이수 - 인정된 기관에서 수행되는 40시간의 기관조정교육
Maine	The Office of Court ADR	100 교육과 실무	최소 40시간의 조정절차교육, 최소 20시간의 조정인 활동경험, 일반적인 민사법 및 법원절차에 대한 10시간의 교육

41) 위 예시자료는 Northern Virginia Mediation Service의 보고서 (2013)의 내용을 일부 발췌, 정리하여 편집한 것임을 밝힌다.

주 (State)	교육프로그램 제공기관	교육 시간	교육내용
Maryland	Community Mediation Maryland, 17개 community mediation center program 교육	40	- 최소 40시간의 기본교육 - 연간 4시간의 보수교육
Massachusetts	법원이 조정을 제공하는 인정된 프로그램과 계약, 기관에서 조정인 인증	30	- 최소 30시간의 교육과 법원 오리엔테이션 - 조정인 역할의 3개의 역할극과 그 중 하나는 완결된 조정일 것 - Trial Court Department가 요구하는 추가적, 전문화된 교육 요건 이수
Michigan	주 법원의 The Office of Dispute Resolution에서 조정인 명부 관리 The State Court Administrative Office에서 승인된 조정교육프로그램/ CDRP*	40*	- General Civil Court Rule Training: 법원에서 승인된 조정교육프로그램 이수 - Michigan Community Dispute Resolution Program (CDRP)* 법원에서 승인되지 않은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교육 + 6시간 미시간 법 및 법원절차 교육)
New York	각 관할법원에서 승인된 교육프로그램	40	- 최소 24시간의 기본조정기법 - 분쟁사건의 유형별 특정 조정기법에 대한 16시간의 추가교육 - 매2년 마다 최소 6시간의 승인된 추가교육
North Carolina	고등법원 조정인 인증 (Superior Court Mediator Certification)	40	- 모든 지원자: 40시간의 법원조정교육프로그램 이수 - 변호사 아닌 자: 6시간의 노스캐롤라이나 법 및 법원절차 추가 교육
Oklahoma	The Dispute Resolution Act에 따른 조정인 인증제 (*의무는 아님) 법에 따라 인증된 교육프로그램	20	조정개관, 경청기법, 협상, 조정 내에서 사적 회의 소집방법, 합의도출방법, 합의에서의 특정 용어, 기타 프로그램 디렉터가 요구하는 특정 요건
South Carolina	The Board of Arbitrator and Mediator Certification 인정 프로그램 Circuit Court Certification	40	승인된 프로그램에서 민사조정 교육 이수

조정교육과 관련해서, 민간기관, 대학, 로스쿨의 학위과정, 수료과정 등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수준의 조정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대학은 분쟁해결 (Dispute Resolution), 갈등해결 (Conflict Resolution), 평화학 (Peace Studies)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는 분쟁해결전공의 학사부터 박사학위까지의 학위과정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 학교마다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조정, 분쟁과 관련한 협상문화, 분쟁관련 커뮤니케이션, 심리학, 사회학 등이 주로 교과과정에 포함되고, 학위 프로그램 중 일부는 개인지도 (supervision) 하에 이루어지는 일정 시간의 실무도 요구한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학위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대학은 California State University Dominguez Hills, Antioch University McGreor, Pepperdine University Law School의 Straus Institute for Dispute Resolution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조정관련 인증프로그

램 (certificate program)을 운영하기도 한다.[42]

ABA (American Bar Association) *Standard* 302(a)(4)[43]는 로스쿨에게 로스쿨 학생들이 다른 직업관련 스킬 (professional skills)에 대한 실질적 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 기준은 미국 로스쿨이 협상 및 다른 ADR 과목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이 기준에 대한 해석, *Interpretation* 302-2는 Standard 302(a)(4)[44]를 충족시키는 '직업관련 스킬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문제해결, 협상, 조정, ADR 등이 포함되었다.[45][46]

그 외에도 다양한 기관에서 조정워크숍이나 조정관련 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조정인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증을 하는 기관은 없기 때문에 영리 또는 비영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조정인 인증 또는 수료 프로그램들 (certificate programs)은 그러한 인증을 받은 자가 소정의 조정교육을 받았거나 조정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자료일 뿐 법적으로 어떠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2. 영국

영국의 경우, 조정절차 및 실무를 감독하는 조정법이나 조정인의 교육, 조정 수행 또는 조정인의 임명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없다. 조정인이 될 수 있는 법적 자격에 관한 요건은 없지만, 조정인은 주로 사무변호사(solicitor)나 법정변론 변호사(barrister)가 대체로 선호된다. 조정을 장려하고, 당사자들이 조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민간회사나 법원과 정부의 이니셔티브들이 있다. 조정인 교육과 인증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민간기관으로는 CMC (Civil Mediation Council)과 CEDR (Center for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CIAarb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ion)이 있다. CMC는 민사, 상사 및 직장 조정의 80개 조정서비스 제공기관들과 그러한 제공기관들의 의해 인증된 6,000여명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기관이다.[47]

---

42) Richard Bowers · Nelle Moffett, *Mediator Licensing and Certification in California, Mediation Consultants*, 2010 (http://www.mediation-consultants.com/articles/Mediator_Licensing_and_Certification.pdf, 2017년 4월 5일 검색).

43) Standard for Approval of Law Schools Std.302(a)(4)(2008), ABA 홈페이지 (http://www.americanbar.org/aba.html) 참조.

44) Interpretation 302-2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Each law school is encouraged to be creative in developing programs of instruction in professional skills related to the various responsibilities which lawyers are called upon to meet, using the strength and resources available to that school. Trial and appellate advocacy, alternative methods of dispute resolution, counseling, interviewing, negotiating, problem solving, factual investigation, organization and management of legal work, and drafting are among the areas of instruction in professional skills that fulfill Standard 302(a)(4).

45) Becky L. Jacobs, "Teaching and Learning Negotiation in a Simulated Environment", *Widener Law Journal* Vol. 18 (2008), p.93.

46) 이로리, "미국 로스쿨에서의 협상교육 방법론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3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3년 6월, pp.117-118.

CMC는 조정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인증제[48]를 운영하고 있는데, CMC의 조정서비스 기관인증은 법무부에 의해 조정의 질적 보장을 표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영국정부는 법무부가 CMC의 인증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CMC와 계속적인 작업을 할 것을 재확인하였고, 훈련 및 서비스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마련하여 민사 및 상사 조정인에 대한 인증을 의무화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암시한 바 있다.[49]

CEDR은 영국산업협회 (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와 대표적 로펌, 비즈니스 및 공공 부문의 지원으로 1990년 출범한 기관이다. CEDR Solve는 독립적인 상사ADR서비스 기관이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조정인 인증 (accreditation)을 제공하는 조정인 교육기관이기도 하다.[50] 조정인 인증과 관련하여, CEDR 인증은 CEDR 인증조정인 (Accredited Mediator)의 지위를 획득할 만큼의 수준을 보여주는 참가자에게 부여된다. 인증은 5일간의 교육프로그램 중 4일차, 5일차 되는 날 평가에 근거하여 부여된다. 교육프로그램 중 4일차, 5일차 되는 날 각 참가자들은 매일 하나의 가상사건에 대하여 조정한다. 강사진이 각 조정회의를 관찰하고, 일정한 조정기능들에 반하는 수행을 평가한다. 이 평가에는 개인적 피드백, 그룹학습 및 토론 등이 함께 반영된다. 참가자들은 동 프로그램 이수 후 2주 내에 세 개의 서면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참가자들이 프로그램 종료 후 받게 되는 세 개의 서면과제로는 서면합의문 (written settlement agreement), 자신의 조정기법에 대한 서면 형식의 자가 평가 (written self-assessment of your mediation skills) 그리고 자신의 경력 에

47) European Parliament, *supra* note 10, p.69.

48) CMC의 인증기관이 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조정서비스 제공기관은 적어도 6명의 훈련된 민사, 또는 상사 조정인으로 구성된 하나의 패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그 조정인들은 조정윤리, 조정이론, 조정실무, 협상 및 역할극 연습을 포함하는 평가되는 훈련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③ 조정인이 법을 포함한 어떤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그 조정인은 민사 또는 상사조정을 수행하기 전에 기본적인 계약법을 파악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④ 조정서비스 제공기관은 그 기관에 소속된 모든 조정인들이 인정된 훈련기관으로부터 인정된 조정교육과정 및 평가를 성공적으로 이수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인증을 획득했다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교육과정 및 평가는 수행평가 및 최저 시간의 교육 및 역할연습을 포함하는데, 그러한 교육은 과거에는 24시간이지만 2014년 기준으로 40시간의 과정이다. ⑤ 조정서비스 제공기관은 구성원들이 따라야 할 행위규범 (Code of Conduct)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⑥ 공표된 불만처리절차를 갖춰야 하며, 그러한 절차에 따라 제기된 모든 불만에 대한 서면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불만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특정된 시한 내에 그 결과를 불만을 제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조정서비스 제공기관은 조정당사자 및 그들의 변호사에게 조정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검토를 요청하는 피드백 시스템 (feedback system)을 갖춰야 한다. ⑧ 조정인은 인증 (또는 재 인증) 전에, 충분한 경험을 가질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거 12개월에 걸쳐 신규 회원인 경우에는 3건, 기존 회원인 경우에는 2건의 민사 또는 상사조정을 참관하여야 한다. 패널 멤버들은 연간 최소한 6시간의 조정 특정적인 전문성을 갖는 평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⑨ 조정서비스 제공기관은 조정인에 대해 제기되는 조정을 태만하게 진행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적어도 £1,000,000의 책임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회원 조정인에게 적어도 £1,000,000 (또는 조정인이 더 많은 금액의 사건에 관여하는 경우 더 높은 금액) 배상의 전문적인 책임보험을 들고, 그 증거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⑩ 조정서비스 제공기관은 수행되는 업무 및 업무량에 비례하는 적당하고 충분한 행정적 준비를 갖춰야 하며, 각 조정사건에 대하여 적절하게 훈련되고, 경험이 있는 능숙한 조정인의 이용을 보장하는 배정 시스템을 보유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매 12개월마다 재 인증 (re-accreditation)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Ibid.*

49) *Ibid.*

50) CEDR의 조정인 인증 프로그램에 관한 기술은 CEDR 인터넷 홈페이지 (www.cedr.com) 참조.

서 조정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싶은지에 관한 간략한 서면형식의 행동계획이 있다. 대략적으로 동 프로그램의 참가자 중 70%가 인증서 (Certificate of Accreditation)를 받는다. 인증서를 취득하지 못한 참가자들에게는 조정기법 기본과정 수료증 (Foundation Course in Mediation Skills Certificate)이 부여되며, 이들에게는 재평가의 기회가 주어진다.[51]

CIArb은 공공분야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30개의 지사를 가지고 있는 비영리 공인기관이다. CIArb은 1915년 창설된 민간분쟁해결방식을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회원제기관으로 12,000개의 회원사를 가지고 있으며, 전문직 공인기관으로 중재, 조정 및 사법판결을 포함하여 분쟁해결의 다양한 분야의 교육 및 직업훈련 및 자격증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CIArb의 인증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분쟁해결분야의 다양한 교육을 포함하고 있어 분쟁해결에 있어 전문성의 공식적인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CIArb은 전문적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자격증, 전문적 지침 및 행위규범 등을 통하여 민간분쟁해결에서의 높은 수준의 지식표준을 추구하고 있다. 동 기관의 조정인의 인증단계는 3단계로 구성되는데, 먼저 준회원 (ACIArb), 회원 (MCIArb), 선임회원 (FCIArb)으로 구별된다.[52] 각 단계의 회원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CIArb 또는 CIArb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일정한 조정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CIArb은 조정, 중재, 국제중재, 사법재판 분야의 Pathways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각 분야별로 단계별 교육프로그램 모듈을 제공하고 있다. 조정과 관련하여, 분쟁해결개론을 제외하고 다음의 총 4개의 조정교육모듈이 있다: Module 1. 상사조정교육 (Commercial Mediation Training); Module 2. 상사조정인증평가 (Commercial Mediation Accreditation Assessment); Module 3. 조정인을 위한 법 (Law for Mediators); Module 4. 조정이론 (Mediation Theory). 분쟁해결개관 과정을 이수하면, ACIArb 자격이 부여되고, 조정교육 Module 1와 Module 2를 이수하면 MCIAb의 자격이, Module 3와 Module 4의 과정을 이수한 후 관련 조정실무능력을 입증하고, 동료인터뷰 (peer interview)를 받으면 FCIArb 자격을 갖출 수 있다. CIArb에서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이 법을 공부하였을 것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53]

3.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법으로 조정인의 자격 또는 인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조정인 인증제는 민간

51) 이로리, 「조정인 교육 및 인증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상사중재원 연구용역, 2011년, pp.40-46 내용 참조.

52) 준회원은 기본단계의 회원등급으로 재판 외 분쟁해결분야에 적합한 사전지식 또는 경험을 보여준 개인에게 부여되며, 회원의 자격은 분쟁해결의 한 분야에서 상세한 정도의 지식을 보여주는 개인에게 부여된다. 선임회원 자격은 분쟁해결의 한 특정 분야와 관련된 원칙, 법과 관행들에 대한 고급 수준의 광범위한 지식과 이해를 보여 줄 수 있는 개인에게 부여된다.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ion (CIArb) 인터넷 홈페이지 (www.ciarb.org) 참조.

53) *Ibid.*

부문과 전문 조정인 협회의 주도로 실시되고 있는데, 네덜란드조정협회인 NMI (Netherlands Mediation Institute)[54]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NMI는 특히 조정인에 대한 최소한의 질적 규범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모든 전문조정인을 위한 일반적 협회로서의 역할과 둘째는 NMI에 등록된 조정인에 대한 질적 통제와 질적 보장을 감독하는 역할이다.[55] NMI는 민간의 독립기관으로 네덜란드에서 조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용가능한 조정서비스의 기준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갖는다. NMI는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다양한 조정모델과 규칙들을 개발하여 왔고, 1995년 자체적인 조정규칙 (NMI Mediation Rules, 2000년 개정)을 채택하였다. 동 조정규칙들은 조정의 원칙과 조정인, 분쟁당사자 그리고 판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56]

NMI는 자격을 갖춘 조정인만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의 조정인명부 (national register of mediators)를 관리하고 있는데, 동 명부에 등록되기 위해서, 조정인은 NMI가 인정하는 기본적인 조정교육을 이수하고, 이론시험과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NMI 등록조정인은 조정지식과 기술을 최신으로 유지할 것으로 요구받으며, NMI에 의해 검증된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조정인은 NMI에 의해 인정된 조정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조정인은 지식 테스트와 역할극 조정에서의 조정인의 행위에 대한 평가를 모두 성공적으로 통과하여야 한다. ③ 조정인은 매 3년 최소 9건의 조정 (총합하여 36계약시간)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조정인은 예를 들어 동료 조정인이 조정인의 업무를 관찰하는 조정세션과 같은 인터비전 세션(intervision session)에 참여해야 하고, 동료평가절차에서 해당 조정인의 업무 및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제공된 제안들을 이행하여야 한다.[57]

조정인은 NMI에 조정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인을 위한 행위규범 (Code of Conduct)를 준수해야 한다. 조정인이 보조금을 받는 법률구조 또는 법원회부사건에서 활동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NMI에 등록해야 하고, 인증과 필요한 평가를 거쳐야 한다. NMI 사이트는 네덜란드의 조정 및 조정인에 대한 독립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수요자의 이해관계와 선호도에 맞게 조정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58]

NMI는 조정교육기관에 대한 인증도 실시하고 있는데, 기관들의 교육프로그램은 6일의 기본코스부터 20일 이상 지속되는 코스도 있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들 중 하나를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것이 NMI 조정인명부에 등록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가 된다.[59]

---

54) NMI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Dutch Mediation Institute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nmi-mediation.nl/) 참조.
55) European Parliament, *supra* note 10, p.47.
56) European Justice, Mediation in Member States – Netherlands (https://e-justice.europa.eu/content_mediation_in_member_states-64-nl-en.do?member=1, 2017년 4월 2일 검색).
57) European Parliament, *supra* note 55.
58) *Ibid.*
59) *Ibid.*

V. 결 론

조정은 분쟁해결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 판결과 달리 당사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반영하여 당사자의 실정에 부합하는 분쟁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당사자들의 자율성이 존중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정은 아직 재판이나 중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이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국가에서는 조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조정의 질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조정인의 교육은 바로 조정의 질과 관련된 문제로 조정인의 자격요건에 조정경험이나 조정교육의 이수 또는 연수경험을 요구하는 것은 조정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선진국들이 주로 채택하는 방식이며,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조정인의 조정교육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조정의 질과 조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조정인 인증제가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는 법원이나 행정형 조정기관의 조정위원의 자격 및 위촉방식이 조정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민간이 수행하는 법원연계형 조정을 제외하고 순수한 민간조정이 전무한 실정이라 국내에서는 조정인 인증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은 편이다. 분쟁해결방식으로서 조정의 원리가 재판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의미한 분쟁해결절차로서 조정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조정 전문성을 갖춘 조정인의 양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 중요성은 민간조정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법형, 행정형 조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조정이 활성화된 미국과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정인 인증제에 관한 국제적 동향에 관한 연구는 한국에서의 조정인의 자격요건 고찰 내지 인증제 도입을 위한 논의에 상당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정인 인증제 실시유무에 상관없이 미국, 유럽국가들 대부분은 분쟁을 조정하는데 있어 조정인에게 일정한 수준의 조정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공통된 인식을 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민사소송법에서 조정인의 자격에 조정수행에 필요한 관련 교육 및 경험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고, 덴마크의 경우 재판행정법으로 법원이 임명할 수 있는 조정인의 자격을 판사나 변호사로 한정하면서, 법조인에 대해서도 조정인으로 활동하기 위해 덴마크 법원이나 변호사협회가 승인한 최소한의 조정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미국, 영국 같이 민간조정이 활성화된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주로 민간 주도형 인증제를 실시하며,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예정) 등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들은 국가 관리형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두 가지 유형 모두 조정인 인증제가 최소한의 조정의 질을

확보하고, 조정인의 자발적인 조정훈련 참여를 유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셋째, 민간 주도형 인증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주로 민간의 조정서비스기관들이 조정인에 대한 교육과 인증을 담당하며, 인증조정인에게 기관에 의뢰된 사건의 조정을 수행하도록 한다. 민간기관에 의뢰된 사건은 법원에서 회부된 사건일 수도 있고, 민간기관에 신청된 조정사건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민간 주도형 인증제를 실시하지만 일부 주의 법원에서 법원조정인 명부에 등록되기 위해 법원 자체의 조정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게 하거나 법원이 승인하거나 인정하는 민간의 조정교육프로그램 제공기관의 인증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민간 주도형 인증제를 도입하는 경우, 민간의 조정인 교육 및 인증이 법원, 법무부 등과의 협력 하에 인증조정인의 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국가 관리형 인증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는 공통적으로 국가가 법으로 조정인의 인증 및 교육요건을 규율한다. 국가 관리형 인증제는 그러한 요건을 충족한 조정인에 대하여 ① 국가가 관리하는 등록조정인 명부에 등록하게 하거나, ② 인증조정인의 타이틀을 쓸 수 있게 하거나, ③ 법원에서 조정인을 위촉하는 경우 인증조정인을 우선적으로 위촉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며, 조정인에게 조정교육 참여의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법에서 정한 조정인의 자격과 교육요건을 충족한 등록조정인명부를 관리하고, 벨기에는 연방위원회가 개별 조정인과 조정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경우, 공공과 민간의 조정서비스 기관을 국가를 인증하여 국가조정기관명부에 등록하고, 등록된 기관들이 법에서 정한 교육 및 인증기준에 따라 개별 조정인을 인증한다.

다섯째, 조정인 인증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최소한의 조정교육시간은 국가별로 그리고 기관별로 다르다. 최소한의 기본교육시간 요건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일정 시간의 기본교육에 더하여 전문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다.

여섯째, 조정교육은 조정실무 수행능력 배양에 초점을 맞추고, 기본적으로 ① 조정이론, ② 모의조정실습/역할극/동료평가 (peer review)/감독 하의 실제 조정 참여 등의 참여활동으로 구성된다. 비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경우에는 ③ 조정관련 법률 (조정에서의 법의 역할, 관련 법률 지식 포함)에 관한 교육이 추가될 수 있다.

일곱째, 조정이론의 내용으로는 대체로 ① 조정인의 역할, ② 조정절차, ③ 조정 커뮤니케이션, ④ 협상 및 조정기법, ⑤ 조정윤리 또는 조정인의 행위규범 등에 관한 사항이 공통적으로 포함된다. 이 중 조정절차에 관한 이론은 조정인의 공정성 및 중립성이 보장되는 방식의 효과적인 조정절차의 전개 및 운영에 초점을 맞춘다.

참고문헌

강 빈, “ADR제도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8년 3월.

강수미, “행정형 ADR의 현황과 개선방안”, 「중재연구」 제25권 제4호, 한국중재학회, 2015년 12월.

김상찬, “일본의 조정인 양성현황과 시사점, 「법학연구」, 제59권, 한국법학회, 2015년 9월.

金容燮, “行政法上 紛爭解決手段으로서의 調停,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2004년 10월.

_____, “민간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 - 독일과 일본의 법제도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57호, 한국법학원, 2016년 12월.

박노형, “조정의 선진화 및 활성화 소고”, 「분쟁해결」, 창간호, 한국조정학회, 2011년 6월.

오대성, “민사조정의 운영실태와 그 활성화방안에 관한 법사회학적 연구 - 광주 및 전남지역의 법원을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7년 8월.

이로리, “우리나라 조정제도의 현황과 과제”, 「중재」, 대한상사중재원, 2012년 6월.

_____, 조정인 교육 및 인증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상사중재원 연구용역, 2011년

_____, “로스쿨에서의 조정교육의 필요성 및 방법론에 관한 제언”, 「한국조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문」, 2013년 8월.

이주원, “한국조정제도의 발전방향”, 「중재연구」, 제12권, 2002년 8월.

장경찬, “조정위원의 역할”, 「한국조정학회 제6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1년 1월 15일.

정선주, “ADR통일절차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민사소송」, 제11권 제1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7년 5월

정영화, “한국 사법제도의 국제비교와 효율성 개선방안 - 소액심판의 강제약식조정제도 도입”, 「저스티스」 통권 제146-3호, 한국법학원, 2015년 2월.

정준영, “가칭 ADR 기본법의 제정방향과 선결과제”, 「언론중재」, 겨울호, 2010년.

최옥환, 민간형 조정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함영주, “미국 법원 연계형 조정의 운영과 시사점”, 「민사소송」 제14권 제2호, 한국민사소송법 학회, 2010년 11월.

Jacobs, Becky L., “Teaching and Learning Negotiation in a Simulated Environment”, *Widener Law Journal* Vol. 18, 2008.

Carle, Dominik Helmut., *A comparative analysis of mediation by examination and critique of the theory and practice thereof in Germany*, Scotland and Switzerland, LL. M thesi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Glasgow, 2015.

European Parliament, *'Rebooting' the Mediation Directive: Assessing The Limited Impact of Its Implementation and Proposing Measures to Increase the Number of Mediations in the EU*, 2014.

European Justice, Mediation in Member States - Netherlands (https://e-justice.europa.eu/content_mediation_in_member_states-64-nl-en.do?member=1, 2017년 4월 2일 검색).

European Justice, Mediation in Member States - France, https://e-justice.europa.eu/content_mediation_in_member_states-64-fr-en.do?member=1, 2017년 4월 2일 검색).

Integriete Mediation e.V - Germany and the European Association of Judges for Mediation (GEMME), *EU Handbook on Mediation: Mediation Law and Practice in Other EU Countries*, Italy 편, 2014.

Boulle, Laurence., *Mediation: Skills and Techniques*, Butterworths, 2001.

Linklaters, *Commercial Mediation - A Comparative Review,* 2013 (file:///C:/Users/LG/Downloads/mediation_2013_7053.pdf, 2017년 4월 15일 검색).

Northern Virginia Mediation Service, State - by- State Guide to Court Mediator Qualification Standards, 2013(https://nvmsus.files.wordpress.com/2014/11/us-mediation-certification-standards.pdf, 2017년 4월 2일 검색)

Bowers, Richard. · Moffett, Nelle., *Mediator Licensing and Certification in California, Mediation Consultants,* 2010 (http://www.mediation-consultants.com/articles/Mediator_Licensing_and_Certification.pdf, 2015년 12월 3일 검색).

ABSTRACT

A Global Trend on the Accreditation for Mediators
- Focused on the U.S. and European Countries -

YI, LORI

A study on the global trend of accreditation for mediators implies many important aspects of controlling of the quality of mediation. Firstly, whether or not having an accreditation system, most European countries and the U.S. have a common understanding on the fact that mediators need to be trained to mediate disputes, apart from their own expertise on the subject matters. Secondly, private-led accreditation has been utilized in countries having a Anglo-American law system such as the United Kingdom and the U.S. a while nation-managed one has been operated in the countries having a continental law system such as Austria, Belgium, Italy and Germany. Thirdly, private mediation service providers (usually institutions or companies) play an active role in the training and accreditation of mediators and further make them act as mediators in the disputes referred to them. Fourthly, the countries having a nation-managed accreditation system usually stipulate a certain mediation training and accreditation requirement by law. Fifthly, there is no uniform trend on the minimum hours of training required for accrediting the mediators. Sixthly, mediation training generally focuses on the practical mediation capacity-building, including mediation theory and role-playing, mediation simulations, peer review and supervision. And finally, the mediation theory mainly includes the role of mediator, mediation procedures, mediation communication, negotiation and communication skills, mediation ethics and mediator's code of conduct, etc.

Key Words : Mediation, Mediators, Qualifications for Mediators, Accreditation, Training, Private Mediation